

제 276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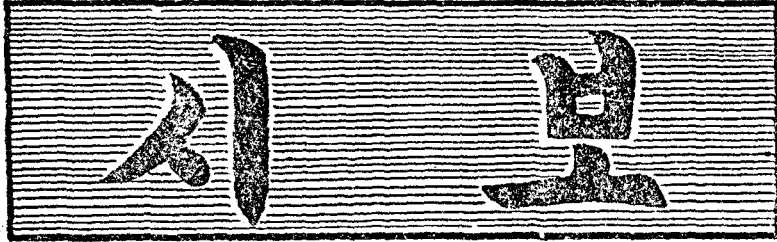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편집 : 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1972. 8. 31.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차 례

이 영구보존을 위하여
1972. 8. 31.
서울특별시 시민과장

○ 규 칙

- 제 1242 호 서울특별시 직제중 개정규칙 3
- 제 1243 호 서울특별시 한강건설사업소 직제중 개정규칙 12
- 제 1244 호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직제중 개정규칙 13
- 제 1245 호 서울특별시 운수사업소 직제중 개정규칙 13
- 제 1246 호 서울특별시 시민화관 직제중 개정규칙 14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규 칙

서울특별시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2년 8월 30일

● 서울특별시규칙 제 1242 호

서울특별시직제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2 내지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 2 (시정개발담당관) ①시정발전
에 관한 연구와 시장의 자문에 응하
기 위하여 시정개발담당관을 둔다.

②시정개발담당관 밑에 제1개발담당,
제2개발담당, 제3개발담당, 제4개발담
당과 제5개발담당을 두고 시정개발담
당관은 서기관으로 각 담당은 지방행
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제2개발담당은 지방토목기좌로
제5개발담당은 지방농림기좌로 보할
수 있다.

③시정개발담당관실의 각담당별 분장사
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개발담당

가. 행정제도와 운영에 관한 연구
(기획, 재정, 조직, 인사, 업무처리
방법, 민원 문서 기타)

나. 담당관실내 타담당 주관에 속하
지 아니하는 사항

2. 제2개발담당

가. 도시계획, 주택, 건축, 토목, 상
하수도 기타 건설에 관한 연구

3. 제3개발담당

가. 도시교통, 관광 및 운수시책에
관한 연구

4. 제4개발담당

가. 보건, 위생, 청소, 사회복지 및
도시공해 대책에 관한 연구

5. 제5개발담당

가. 도시미화, 공원, 녹지 및 산업시
책에 관한 연구

제2조의 3 (감사담당관) ①산하기관에
대한 자체감사와 외부감사 수감에 관
한 사무를 분장키 위하여 감사담당관
을 두고 감사담당관은 제1부시장을
보좌한다.

②감사담당관 밑에 감사제1담당, 감사
제2담당, 감사제3담당과 감사제4담당
을 두고 감사담당관은 서기관으로 각
담당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감사담당관실 각담당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사제1담당

가. 감사행정에 대한 종합계획
나. 국정감사, 감사원감사등 외부감사
에 대한 수감준비 및 사후처리
다. 관광운수국, 수도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비위조사 및 비위공무
원의 징계 제청

라. 시비보조단체, 시비투자기관, 사금
고에 대한 감사

마. 담당관실내 타담당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감사제 2담당

가. 기획관리관, 비상계획관, 공보실, 내무국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비위조사 및 비위공무원의 징계 제청

나. 구청,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비위조사 및 비위공무원의 징계 제청. 다만, 구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행정과와 공동으로 실시한다.

3. 감사제 3담당

가. 도시계획국, 보건사회국, 청소국, 건설국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비위조사 및 비위공무원의 징계 제청

나. 한강건설사업소, 노동위원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비위조사 및 비위공무원의 징계 제청

다. 특별감사, 암행감사

라. 감사제 4 담당

- (1) 서정쇄신에 관한 사항
- (2) 봉사점열 및 민원감사
- (3) 중요사업 추진 확인에 관한 사항
- (4) 재무국, 산업국, 주택관리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비위조사 및 비위공무원의 징계 제청
- (5) 지하철건설본부, 소방본부,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비위조사 및 비위공무원의 징계

제정

제 4 조 제 1 항 중 "행정연구체" 를 "기획관리계" 로 하고 제 2 항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획관리계

- 가. 수도행정자문위원회 운영
- 나. 상황판제작 및 유지관리
- 다. 시정현황 자료 발간
- 라. 도시개발 자료실 운영
- 마. 행정실적의 종합기록 및 유지관리
- 바. 시사편찬 및 동위원회 운영

제 10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0 조 (공보실) ① 공보실장은 사기관으로 보한다.

② 공보실에 공보계, 보도계와 문화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공보실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 보 계

- 가. 문화공보행정의 종합계획
- 나. 공연장 설치에 관한 사항
- 다. 비공연자 공연행위지도
- 라. 각본심사 및 공연에 관한 사항
- 마. 광고영화점열
- 바. 영화기사 면허
- 사. 시민위안행사 및 사업소 안내
- 야. 서울특별시보 발간
- 자. 시민회관, 시립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어린이 합창단 운영
- 차. 실내 타게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보도계

가. 시정보도

나. 내외신문과 라디오, TV 방송 등 취재분석

다. P.R용 사진영화 제작

라. 유선방송업체 운영지도

마. 청내 사진실 운영

바. 표본 여론 조사

사. 순회 영화 활동

3. 문화계

가. 향토문화 보급, 연구, 보존

나. 서울특별시 문화위원회 운영

다. 향토문화재 발굴지정 및 해제

라. 문화재 보존 유지관리

마. 향교 및 사찰에 관한 사항

바. 종교 및 문화예술단체와 기타 사회단체의 지도 육성

사. 반공단체 지도 및 계몽

아.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자. 부정기 간행물 출판

차. 기타 문화, 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제1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내무부에 총무과, 행정과, 인사과와 시민과를 둔다.

제13조 제2항 제1호중 "차"를

"카"로하고 "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호중 "위임전결권의 구분 및 사무양계획수립"을 삭제한다.

차. 거리환경정비사업의 종합계획 및 결과종합

제15조 「삭제」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세정과) ①세정과에 세정계, 세원계, 지적계와 자료처리계를 두고 지적계장은 지적기좌로, 기타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세정과의 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 정 계

가.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나. 세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다. 세정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과 집행 및 집행실적에 관한 심사와 종합조정 및 통제

라. 지방세제와 지방세에 관한 법률 명령, 규칙의 연구, 개정건의 및 정비

마. 지방세법운영에 관한 조부의 심사 및 이에 관한 문서의 보존, 보관

바. 시세, 세입예산과 재청비의 조정 배분

사. 구 세무행정의 전반적인 지도와 감독

아. 시세 징수사무의 계획과 지도 감독

자. 시세수입 및 세외수입의 통계 보고

차. 납세 담보에 관한 사항

카. 징수유예 신청의 처리와 납세연장의 승인

타. 시세 체납처분에 대한 재조사 및

심사청구와 민원 또는 쟁송에 관한 사무처리

파. 과오납의 총당, 환부 및 교부금 사무

하. 징수금 망실사고의 처리와 결손 처분의 지도감독

거. 과내 서무와 국내 타과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세 원 계

가. 취득세, 자동차세, 유흥음식세, 도축세, 마련세, 면허세, 재산세, 농지세와 목적세에 대한 세원개발의 지도감독

나. 시세에 대한 부과액통계보고와 시세부과액의 집계

다. 시세에 대한 세원조사와 사찰및 유흥음식세의 경영실태분석 총별지정 확인및 균형 조정

라.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한 등록세 과세 시가 표준액책정 승인 신청

마. 농지세 소득표준을 결정 및 차량, 중기, 주, 입목 건물의 부착된 부대설비 과세표준액 결정

바. 시세에 대한 질의 조복과 재조사심사청구, 소원, 청원, 민원, 쟁송 사무처리

사. 시세에 대한 사고의 범칙자처리

아. 가옥대장 및 과세대장 정비보존 지도감독

3. 지 적 계

가. 지적공부의 정리 보존에 관한 지도 감독

나. 측량검사 (30 필이상의 광대지 도근측량, 삼각측량, 확정측량)

다. 지적산정검사와 측량원인 검사및 사열

라. 지적에 관한 경계 감정인 선정

마. 토지과세기준조사및 임대가격설정 에 관한 지도

바. 지적도의 작성보안

사. 지적관계 제증명 발급에 관한 지도

5. 자료처리계

가. 세무행정의 기계화 계획의 수립 에 관한 사항

나. 부과장수 및 조사업무에 관한 전자계산 조직의 관리및 프로그래밍

다. 자기 테이프 및 기본자료의 관리

라. 전자계산조직 이용 대상업무에 관한 개발연구

마. 전자계산조직요원 훈련에 관한 사항

제 20 조제 1 항중 "재산관리계"를 "재산총괄계"로 하고 제 2 항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산총괄계

가. 사유재산제도의 조사, 기획, 입안 유지보존 및 운용

나. 사유재산의 총괄과 조정통제

다. 사유재산의 관리운용에 관한 지도 감독

라. 공용, 공공용재산의 취득차입 마, 국유재산의 차입 (유상, 무상),

양수 및 귀속재산의 차입, 공유화, 불화

바. 공용, 공공용재산의 용도제한 및 불용재산의 매각책정

사. 과내 타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 2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3 조 (도시계획과) ① 도시계획과에 종합계획계, 지역계획계, 가로계획계, 재개발계와 조경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토목기좌로 보한다. 다만, 종합계획계장과 조경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계획계

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도시계획 관계 법규 정비

다. 도시계획 관계 위원회 운영

라. 도시계획법 제 4 조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일단의 주택단지 및 사도업무)

마. 지하철건설본부

바. 과내 타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지역계획계

가. 지역지구의 지정

나. 도시계획시설중 공원녹지, 운동장, 유원지, 관광탑, 학교, 도서관, 향민항공, 공공용지, 유통업무설비, 공용청사, 시장, 도살장, 공동묘지, 화장장,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전기공급설비,

저수지, 방풍설비, 가스공급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전신통신설비,

방수방화설비, 소방설비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3. 가로계획계

가. 교통처리 및 고속교통계획

나. 도로인정

다. 건축선 지정에 관한 협조

라. 경계 명시 측량

마. 도시계획시설중 도로, 광장,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교량, 상수도, 하수도, 공동구, 철도, 궤도, 고속철도, 하천, 운하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4. 재개발계

가. 재개발사업의 계획 및 실시

나. 민간인 재개발사업의 행정지원과 지도감독

다. 정비대상지역내의 시설계획 및 조정

라. 기타 도시시설 정비에 관한 계획

5. 조경계

가. 도시조경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나. 조경사업시행의 조정통제와 지도

다. 조경위원회 운영

라. 기타 도시조경에 필요한 계획

제 24 조 제 2 항중 "환지제 2 계, 정지제 1 계와 정지제 2 계"를 "환지제 2 계와 정지제"로 하며 제 3 항제 2 호중 "정지제 1 계, 정지제 2 계"를 "정지제"로 한다.

제 25 조 제 2 항중 "환지제 1 계, 환지제 2 계"를 "환지제"로 하며 제 3 항제 1 호중 "환지제 1 계, 환지제 2 계"를 "환지제"로 하고, "파"를 다음과 같이 한다.

파. 과내 타계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 28 조제 2 항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 전 계

- 가. 차량검사에 관한 계획 및 조정
- 나. 자동차검사 대행사업허가 및 지도감독
- 다. 자동차 보안기준 및 구조 기준에 관한 사항
- 라. 고속버스(시외버스)에 관한 사항
- 마. 터미널(여객, 화물)
- 바. 자동차 보험에 관한 사항

제 29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9 조(운수운영과) ①운수운영과에 운수제 1 계와 운수제 2 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운수운영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수제 1 계

- 가. 노선업종 사업 면허
- 나. 노선개선 명령
- 다. 노선업종 휴지 및 폐지
- 라. 노선업종 면허사항 통계
- 마. 노선업종 양도양수 및 합병인가
- 바. 노선업종 면허대장 기록 정비 및 관리
- 사. 노선업종 운송시설 인가 취소 및 개선 명령
- 아. 정류소 설치 인가 및 취소
- 자. 노선업종 운행증 발급
- 차. 노후차 대체

카. 과내 타계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운수제 2 계

- 가. 구역업종 사업면허
- 나. 구역업종 휴지 및 폐지
- 다. 구역업종 양도양수 및 합병인가
- 라. 구역업종 면허사항 통계
- 마. 구역업종 면허대장 기록 정비 및 관리
- 바. 구역업종 운송시설 인가 취소 및 개선 명령
- 사. 구역업종 운행증 발급
- 아. 택시 승차대 인가 취소 및 관리
- 자. 운송알선 사업면허

제 30 조제 2 항제 1 호중 "노선업종차량 운행증 발급"을 삭제한다.

제 3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2 조(관광과) ①관광과에 관광진흥계, 관광사업계와 관광지도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관광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진흥계

- 가. 관광행정의 종합계획 조정
- 나. 관광선전 및 관광이념의 보급계몽
- 다. 관광객의 유치 및 여행안내
- 라. 관광시설의 설치
- 마. 관광에 관한 국제회의
- 바. 관광안내소 운영
- 사. 과내 타계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관광사업제

가. 관광업소 등록 및 허가
나. 관광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3. 관광지도제

가. 관광자원의 조사통계 및 개발
나. 관광업체 지도 감독
다. 관광협회 운영의 지도감독
라. 관광업체 종사원 교양지도

제 34 조제 2 항제 2 호 내지 제 3 호를 다
음과 같이 한다.

2. 식품위생제

가. 식품위생업소 허가 (제조업소 제
외)
나. 요리사 및 조리사의 양성과 자
격)
다. 시민 영양의 개선지도와 식생활
지도
라. 각종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검
찰

마. 보건소 식품위생행정의 지도 (식
품제조 제외)

3. 환경위생제

가. 환경위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
허가
나. 환경위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
단속과 위생검찰
다. 이공사 미용사의 양성과 지도
라. 부정식품 단속

마. 보건소 환경위생 행정 및 식품
제조관계 행정의 지도

제 35 조제 2 항제 1 호중 "라"를 "마"
로, "마"를 "바"로 하고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 2 호중
"시민건강운동 및 기생충의 구제와
예방"을 "시민건강운동"으로 한다.
"라. 기생충의 구제와 예방"

제 38 조제 2 항제 1 호 내지 제 2 호를 다
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제

가. 아동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나. 요보호아동에 관한 특수시책에
관한 사항
다. 일반아동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
라.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마. 시영아동시설에 관한 운영 지도
감독 (아동상담소 제외)
바. 사단법인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사. 탁아시설 및 지도감독
아. 파내 타계주관에 속하지 아니하
는 사항

2. 아동시설제

가. 후생시설 관계 법인의 인가 설
치 허가 및 지도 감독
나. 아동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고아, 기아, 부랑아, 정신박약자,
지체부자유아, 맹아아, 불행아동의
보호
라. 아동불량화의 방지 및 고아 후
견인 지정

마. 사설아동복지시설 지도육성에 관
한 사항

제 42 조제 1 항중 "양정과, 물동경제과와 녹지과"를 "양정과와 녹지과"로 한다.

제 4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3 조 (상정 과) ①상정과에 상정계, 소비자 보호계와 계량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상정과의 계량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 정 계

가.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나. 시장계획 및 후보지 선정과 개설

다. 시장관계 사단법인 설립허가 및 감독

라. 도매시장 운영 및 지도감독

마. 도매시장 개발계획 수립 및 품목 조정

바. 회전기금 운영

사. 상공회의소 지도 감독

아. 파내서무와 국내 타과, 계주 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소비자 보호계

가. 유통구조의 개선

나. 물가조사 및 동향분석

다. 물자수급 및 계획의 조정

라. 공공요금의 심사 조정

마. 물가의 조정 단속

바. 소비자 보호

사. 가격표시제 및 상도의 양양

아. 서울특별시 유통체계 개선위원회 운영

자. 주요 생필품 비축사업

3. 계 량 계

가. 계량의 연구 및 조사

나. 계량기 검사 및 검정

다. 미터법 실시에 관한 사항

라. 계량기 사업 관리

제 44 조제 2 항제 2 호 말미에 "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수출진흥 및 통제에 관한 사항

제 48 조 「삭제」

제 50 조제 1 항중 "관리제 1 과"를 "건설행정과"로 "관리제 2 과"를 "시설관리과"로 하고 제 2 항중 "관리제 1 과장과 관리제 2 과장"을 "건설행정과장과 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제 51 조중 "관리제 1 과"를 "건설행정과"로 한다.

제 5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2 조 (시설관리과) ①시설관리과에

시설관리계, 공지관리계와 유료도로계
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시설관리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관리계

가. 지하도 및 지하상도 유지관리

나. 지하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운
영 관리

다. 육교, 입체교차로 및 가드레일
유지관리

라. 도로상의 장애물 관리

마. 도로의 사용허가와 관리

바. 도로 수익자 부담금, 도로사용
료 과정에 관한 사항

사. 도로의 폐도

아. 파내 타계주관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

2. 공지관리계

가. 하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
용허가에 관한 사항

나. 공유수면 매립 면허에 관한
사항

다. 하천(뱍천)부지의 교환 및

양여에 관한 사항

라. 구거부지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

마.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료(사용
료) 과정의 지도감독

바. 하천 수익자 부담금 과정에 관
한 사항

사. 국유재산(공공용지)의 첩기등기
에 관한 사항

3. 유료도로계

가. 유료도로의 운영

나. 유료도로 수입금의 세입

다. 유료도로 관리인의 인사보수

라. 기타 유료도로에 관한 사항

제 62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급수과에 배수계, 누수방지계와 급수
장치계를 두고 배수계장과 누수방지계
장은 지방토목기좌로 급수장치계장은
지방기계기좌 또는 지방토목기좌로
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한강건설사업소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2년 8월 30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243 호

서울특별시한강건설사업소직제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한강건설사업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1 항중 「지방 기감」을 「지방 시설기감」으로 「지방 부기감을」 「지방 시설부기감」으로 한다.

제 4 조 내지 제 8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조 (과외 설치) 사업소에 관리과와 공사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공사과장은 지방토목 기정으로 보한다.

제 5 조 (관리과) ① 관리과에 서무계와 관리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과의 제별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 무 계

가. 문서, 판인 및 기밀

나. 인사, 복무, 급여 및 후생

다. 비품 관리

라. 5.16 광장 관리

마. 용지의 분양 및 대부

바. 예산 및 회계

사. 과내 서무와 타과, 제 주관에 속

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관 리 계

가. 공사 지구내 용지 매수 및 보상

나. 각종 공사의 발주

다. 각종 공사용 관급자재 구입과 출납

라. 공사용 자재 관리

마. 관할 구역내 토사 대각

제 6 조 (공사과) ① 공사과에 계획계 공사제 1 계와 공사제 2 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토목기좌로 보한다.

② 공사과의 제별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 획 계

가. 한강의 종합개발계획과 토지이용 계획

나. 개발을 위한 조사측량

다. 각종 토목 공사계획 설계

라. 공사 검사

마. 과내 타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공 사 제 1 계 와 공 사 제 2 계

가. 지구내공사 시공감독

나. 지구내 토지정리 시공감독

다. 지구내 도로, 교량, 하수시설의 유지관리

제 7 조 (지구의지정)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제 1 계와 공사제 2 계의 분장 사무는 지구별 또는 공사별로 분장하되 지구의 지정은 소장이 이를 행한다.

제 8 조 (직무대행) 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수 없을 때에는 관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9 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2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2년 8월 30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244 호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
본부직제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 조 제 1 항중 "기획계와 경리계"를

"기획계, 경리계와 운영계"로 하고

제 2 항 제 2 호중 "바, 개업준비계획과

그 시행"을 삭제하며 제 2 항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운영계

가. 지하철운영 개업준비계획 수립

나. 지하철운영제도및 운영 방법의 연구

다. 지하철운영에 따른 재반 규정의

정비

라. 지하철운영 요원의 교육 훈련

마. 지하철운영 요원의 확보

부 칙

이 규칙은 1972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운수사업소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2년 8월 30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245 호

서울특별시운수사업소

직제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운수사업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조 (자동차운수사업소) ① 자동차운수사업소에 서무계, 업무계와 정비계를 두고 서무계장과 업무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정비계장은 지방기계기사로 보한다.

② 자동차 운수사업소의 계별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 무 계

가. 문서, 관인, 기밀

나. 당직, 청중단속

다. 인사, 복무, 급여및 후생

라. 기획 및 예산

마. 물품관리

바. 도서 및 비품관리

사. 재반 통계

아. 금전및 유가증권의 출납보판

자. 계약 및 지출

차. 물품 검수 및 검사입회

카. 금고 및 저장물관리

타. 주유소 관리

파. 타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

2. 업무계

- 가. 운영계획 및 배차
- 나. 승무원 지도 감독 및 교육훈련
- 다. 교통사고처리
- 라. 승차권 판매 처리
- 마. 노무관리

3. 정비계

- 가. 자동차 정비계획의 수립
- 나. 자동차의 상비점검
- 다. 자동차 정비에 관한 물동계획
- 라. 자동차의 수리 및 보수
- 마. 정비공의 교육훈련 및 지도 감독
- 바. 폐품의 정비

부 칙

이 규칙은 1972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시민회관직제중개정규칙을 이
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 양택식
1972년 8월 30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246 호

서울특별시시민회관
직제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시민회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 내지 제 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조 (과) 회관에 관리과와 기술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술과장은 지방전기과 또는 지방전
축기과로 보한다.

제 4조 (관리과) ① 관리과에 업무계, 관
리계와 정리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
정주사로 보한다.

② 관리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계

- 가. 인사, 문서, 관인
- 나. 당직 및 청중단속
- 다. 대관 및 부속실 운영
- 라. 행사계획 및 안내
- 마. 수표
- 바. 운영위원회계획
- 사. 과내서무 및 타과 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

2. 관리계

- 가. 차량 전차의 관리
- 나. 청사 유지관리 및 청소

3. 정리계

- 가. 예산, 회계 및 정리
- 나. 금전 및 유가 증권의 출납보관
- 다. 회관 사용료의 징수
- 라. 용도
- 마. 물품관리 및 물품출납보관
- 바. 매표

제 5조 「삭제」

부 칙

이 규칙은 1972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